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
2007년 2월 pp. 3~28

논문접수일 2007.01.30
논문심사일 2007.01.31
심사완료일 2007.02.07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 ICC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Acceptability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 Focused on the ICC Interpretation and Caselaws in the U.S. and Korea -*

강 원진 ** · 김동윤 ***

-
- I. 서론
 - II. 비서류적 조건의 이론적 고찰
 - III.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국제규칙·법제
 - IV. 비서류적 조건 인정여부에 대한 ICC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례검토
 - V.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 VI. 결론
-

I. 서 론

국제상거래에서 중요한 대금결제수단인 신용장은 근거계약과의 독립성 및

* 본 논문은 2006년 8월 11일 무역학자 전국대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교수, 주 저자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공동발표자

서류문면상의 추상성에 근거하여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수의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 또는 충족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이행하게 된다.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신용장 자체의 완전성과 정확성의 원칙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이 결여된 상태로 발행될 경우 수의자가 신용장을 유효하게 사용하는데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발행은행의 지급이행도 예견 가능하지 아니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특히, 신용장 조건상에 수의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조건만을 명시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는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비서류적 조건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서류가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 신용장상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및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에서는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과 적용에서 있어 법원의 판례를 검토할 경우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비서류적 조건을 보증 또는 기타 약정으로 취급함으로써 비서류적 조건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제시와 관련하여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국제규칙과 관련법제 및 사례를 검토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제상관습과 관련하여 UCP 및 ISP98을 참조하였으며 관련 법제는 미국 UCC 제5편 신용장편을 참조하고 관련 저널을 참조하였다. 사례연구로는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수용하였다.

II. 비서류적 조건의 이론적 고찰

1. 비서류적 조건의 의의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이라 함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서류가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 신용장상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¹⁾ 예를 들면 '선적은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표시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²⁾ 또는 신용장에는 물품이 독일산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³⁾를 전형적인 비서류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신용장상에 명시된 조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근거계약의 이행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를 요구하게 되어 신용장과 근거계약은 별개라는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⁴⁾ 하지만, 신용장이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포함하는 경우, UCP 500 제13조 c항⁵⁾에 따라 항상 비서류적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⁶⁾ 비록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비서류적 조건이 아닌

-
- 1) Katherine A. Barski,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 Law Review*, Vol. 41 Loyola University, 1996, p.746.
 - 2) John F. Dolan, "Letter of Credit : A Comparison of UCP 500 and the U.S. Article 5", *Journal of Business Law*, November, 1999, p. 534.
 - 3) Uniform Commercial Code Rev. Art. 5 Official Comment No.9.
 - 4) Janis Penton Soshuk, "The Consequences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Brooklyn Law Review*, Vol. 56, No. 1, 1990, p.42.
 - 5) UCP 500 Art.13(c).
 - 6)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연구」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2, p.140.

서류적 조건이라 볼 수 있다.

2. 비서류적 조건의 유형⁷⁾

1)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거래에서 외관상 비서류적 조건이지만, 엄밀하게는 UCP 제13조 c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재된 대로 효력을 가지는 조건⁸⁾ 즉, 비서류적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ICC은행위원회에 질의된 사례에서 '수에즈운하를 경유하여 물바사로 항해하는 선박에 의한 선적'⁹⁾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과 연계성(linkage)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¹⁰⁾ 이는 이 조항들이 특정서류와 연계성을 가지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¹¹⁾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비록 신용장에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자에 의해 제시된 서류에 따라 선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서류적 조건이라 볼 수 있다.¹²⁾ 이와 관련하여 UCP 500에서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서류의 발행자, 서류의 문언 또는 자료

7) 석광현 교수는 비서류적 조건을 신용장 본질에 반하지 않는 조건과 신용장 본질에 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외관상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신용장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조건과 신용장의 본질에 반하는 조건으로 구분하고 신용장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조건은 다시 유해적 조건과 비서류적 조건(무익적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유해적 조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근거는 ISP98 4.11(b),(c)을 근거로 두고 있다. 비서류적 조건(무익적 조건)의 효력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UCP500 Art.13(c)을 근거로 두고 있다. 또한 신용장의 본질에 반하는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무익적 조건)과 유익적 조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서류적 조건(무익적 조건)의 효력은 무효한 것으로 신용장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조건과 같은 UCP500 Art.13(c)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유익적 조건은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장성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UCC §5-108(g)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석광현, 상계논문, p.154.

8) 석광현, 상계논문, p.144.

9) 'shipment to be by seafreight vessel sailing to Mombasa Port via Suez'; ICC, Edited by Gary Collyer & Ron Katz,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632, ICC Publishing S.A. 2002. R 212.

10) '선적은 선령이 15년 이상인 선박에 의하여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은 일반적인 선화증권에는 선박의 선령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제시서류가 요구되지 않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

11) Charles del Busto(ed), *UCP 500&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7, p.42.

12)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 revised," *Warren, Gorham & Lamont*, 1996, pp.2-21.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서류의 자료내용이 그 밖에 명시된 서류와 모순되지 않으면 제시된 대로 수리 한다¹³⁾는 규정을 두고 있어 비록 비서류적 조건이지만 제시된 서류에 의하여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선적은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표시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된다.

Sherwood & Robers, Inc. v. First Security Bank of Missoula사건¹⁴⁾의 예를 들면, 신용장에 기재된 '구제되지 않은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이행된다'는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었다. 은행은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수익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은행이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제되지 않은 불이행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은행이 그러한 조건에 대하여 사실적인 판단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고려하여 할 사항으로 모든 신용장거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한 등의 경우에도 비서류적 조건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한 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없어도 그 자신의 기록 또는 통상의 영업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증명할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¹⁵⁾ 다른 하나

13) UCP 500 Art(21); "When documents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and commercial invoices are called for, the Credit should stipulate by whom such documents are to be issued and their wording or date content. If the Credit does not so stipulate, banks will accept such documents as presented, provided that their data content is not inconsistent with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presented."

14) 209 Mont. 402, 682 P.2d 149(1984).

15) UCC Rev. Art.5 Official Comment No.9; ISP 98 4.11.(c)(i).

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한은 “conditions”(미래에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라 “terms”(실행이 확실한 사건)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다. 후자의 경우 UCP 500 제13조 c항과 관련하여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한은 “terms”에 해당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III.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국제규칙·법제

1.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UCP)에서는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 한다¹⁷⁾’고 규정하고 있다.

UCP 500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하여 UCP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업무처리상 오해와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함으로 해석 할 수 있으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 기준만을 설정하고 있어 UCP500의 규정만으로 그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편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에서도 ‘비서류적조건(Non-Documentary Terms or Conditions)’이라는 조항을 규정¹⁸⁾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ISP98 a항은 보증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그러한 조건은 제시에 관하여 일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보증과 발행, 조건

16) Charles del Busto(ed), *op.cit*, p.42

17) UCP 500, Art.13(c). “If a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한편 UCP600 제2차 완성초안에서도 제14조 서류심사기준 규정 h항에 “If a credit contains a condition without stipulating the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it.” UCP 600에서는 UCP500에서의 조항에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ICC Second complete draft of UCP600-Cover Note to National Committees, ICC Banking Commission, March 6, 2006.

18) ISP98 Rule 4.11.

변경 또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발행인의 의무와 상관없이 무시되어 져야 한다¹⁹⁾고 규정하고 있다. b항에서는 보증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여부를 발행인 자신의 기록 또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행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은 비서류 조건이다²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c항에서는 발행인 자신의 기록 또는 그 자신의 정상적 영업활동 범위 내 결정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²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항에서는 발행인은 보증과 그렇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에 명시되거나 참고하도록 된 공식에 따른 수익자의 계산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²²⁾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ISP98 4.11조와 UCP 500 제13조 c항과 동일하게 비서류적 조건에 관한 유사한 규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비서류적 조건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표준관행을 제공하고 있다.²³⁾ ISP98에서는 보증신용장관행을 반영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정의와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진일보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²⁴⁾ 비서류적 조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ISP98에서는 UCP500의 규정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과 적용에 있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
- 19) ISP98 Rule 4.11(a); "A standby term or condition which is non-documentary must be disregarded whether or not it affects the issuer's obligation to treat a presentation as complying or to treat the standby as issued, amended, or terminated."
 - 20) ISP98 Rule 4.11(b); "Terms or conditions are non-documentary if the standby does not require presentation of a document in which they are to be evidenced and if their fulfillment cannot be determined by the issuer from the issuer's own records or within the issuer's normal operations."
 - 21) ISP98 Rule 4.11(c); "Determinations from the issuer's own records or within the issuer's normal operations include determinations of: i. when, where, and how documents are presented or otherwise delivered to the issuer; ii. when, where, and how communications affecting the standby are sent or received by the issuer, beneficiary, or any nominated person; iii. amounts transferred into or out of accounts with the issuer; and iv. amount determinable from a published index(e.g., if a standby provides for determining amounts of interest accruing according to published interest rates)."
 - 22) ISP98 Rule 4.11(d); "An issuer need not re-compute a beneficiary's computations under a formula stated or referenced in a standby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standby so provides."
 - 23) 남풍우, 한상현,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과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12, 5, p.140.
 - 24) James E. Byne, *ISP98 & UCP5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2000, p. 105.

2. 유엔협약과 미국 통일상법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독립적보증서와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IGSLC)에서는²⁵⁾ “획약의 제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협약의 제 조건이나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독립적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의 관습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인 규칙과 관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²⁶⁾하고 있다. 또한 “획약과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보증인/발행인은 신의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독립적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의 국제적인 관습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²⁷⁾는 규정과 함께 협약에 따른 지급청구는 언급된 형식에 따라 협약의 제 조건에 일치하게 행하여져야 한다²⁸⁾ 그리고 보증인/발행인은 제14조 1항에 언급된 행위의 표준에 따라 지급청구 및 모든 첨부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²⁹⁾는 규정을 두고 있어 UCP 및 ISP98과 같이 비서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25)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GAOR, 50th Sess., Supp. No. 17, at 39–40, U.N. Doc. A/50/17(1995)
 - 26) CIGSLC Art.13(2); “In interpreting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dertaking and in settling questions that are not address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dertaking or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gard shall be had to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usages of independent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practice.”
 - 27) CIGSLC Art.14(1); “In discharg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undertaking and this Convention, the guarantor/issuer shall act in good faith and exercise reasonable care having due regard to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of international practice of independent guarantees or stand-by letters of credit.”
 - 28) CIGSLC Art.15(1); “Any demand for payment under the undertaking shall be made in a for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7 an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dertaking.”
 - 29) CIGSLC Art.16(1); “The guarantor/issuer shall examine the demand and any accompanying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conduc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14. In determining whether documents are in facial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dertaking, and ar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the guarantor/issuer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 of independent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practice.”

발행은행은 제시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 또는 거절과 관련된 사항을 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거절통지의 이유를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³⁰⁾고 규정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적용과 서류심사기준에 있어 UCP 및 ISP98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³¹⁾ 이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 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국제규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95년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UCC)에서는 '신용장을 구성하는 확약에 있어 비서류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고,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³²⁾라고 규정하여 신용장의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요구하는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서류적 조건을 무효화시키고 있다.³³⁾ 이는 비서류적 조건의 적용에 대하여 UCP와 같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식주석에서 발행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여야 하지만 발행은행이 비서류적 조건의 이행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발행의뢰인에게 약속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무시한데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³⁴⁾라는 사항을 명시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비서류적 조건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UCC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관련하여 공식주석에서 '신용장하에서 발행인의 책임은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검토에 기초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은 계약법과 계약관행에서 다른 어지기에 더 적합한 것이다.³⁵⁾라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방식의 거래에 적용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 30)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GAOR, 24h Sess., P28, at 7, U.N. Doc. A/CN.9/345(1991).
- 31) Richard F. Dole, Jr. "The Essence of a Letter of Credit under Revised U.C.C Article 5 :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Nondocumentary Conditions Affecting Honor", *Houston Law Review*, Vol. 35 Winter, 1998, p. 1103.
- 32) UCC 1995 §5-108(g); "If an undertaking constituting a letter of credit under Section 5-102(a)(10) contain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reat them as if they were not stated."
- 33) Richard F. Dole, Jr. *op.cit*, pp. 1080~1081.
- 34)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 of Credit*, 1995, Official Comments 9.
- 35) Uniform Commercial Code Rev. Art5. Official Comment No.9.

IV. 비서류적 조건 인정여부에 대한 ICC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례검토

1. ICC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

ICC은행위원회에 질의된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UCP500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신용장상에 '수에즈운하를 경유하여 몸바사로 항해하는 선박에 의한 선적'이라는 비서류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서류적 조건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ICC은행위원회에 질의³⁶⁾한 사항이다.

본 사례에서 UCP500의 규정³⁷⁾을 적용하면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만을 기재한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ICC은행위원회는 UCP500의 관련규정³⁸⁾을 적용하여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에 약정되어 있는 서류와 연계되어 있다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³⁹⁾고 답변하였다. 비록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선화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매입은행에 의해 발행된 신용장을 수령하는 하는 것으로 지급이 이행 된다'

36) Gary Collyer(ed), *Opinion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ICC Publishing S.A., 1997, pp.35-36.

37) UCP 500 Art.13(c).

38) UCP 500 Art.23(ii)(iii).

39) ICC Position Paper No.3.

라는 비서류적 조건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이 발행되고 발행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수리하였으나 이후 UCP500의 비서류적 조건이 적용되어 지급을 거절한 사례⁴⁰⁾에 대하여 ICC은행위원회에 질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ICC은행위원회는 신용장의 발행을 위한 모든 지시와 신용장 그 자체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신용장에 대한 변경을 위한 모든 지시와 변경 그 자체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할 서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⁴¹⁾과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한다⁴²⁾는 규정을 들어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조건이 신용장상에 기재될 경우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된다.

2. 미국법원의 판례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판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되어 적용하여 오고 있다. 이는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는 신용장의 본질적 성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사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Continental Grain Company v. Merdien International Bank, LTD 사건⁴³⁾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에게 판매한 쌀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다. 발행된 신용장에는 4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⁴⁴⁾ 이러한 조건에 따라 발행의뢰인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대금지급이

40) Gary Collyer(ed), *Opinion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2004*, ICC Publishing S.A., 2005, pp.32-33.

41) UCP 500 Art.5(b); "All instructions for the issuance of a Credit and the Credit itself and, where applicable, all instructions for an amendment thereto and the amendment itself, must state precisely the document(s) against which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is to be made".

42) UCP 500 Art.13(c).

43) 894. F.Supp. 654(S.D.N.Y. 1995).

이행되지 않은 쌀의 2/3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조건은 수의자가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모호한 4가지 조건이 명백한 서류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비서류적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Pringle-Associate Mortgage Corporation v. Southern National Bank of Hattiesburg, Mississippi 사건⁴⁵⁾

신용장상에 다른 은행에 의해 연장된 신용장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만 수의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위의 조건은 근거계약에 대한 일반적 언급은 부가조건이며 발행은행은 수의자가 신용장 조건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러한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으로서 무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수의자가 발행은행에 제시한 진술서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은 충족되어진 것이며 따라서 발행은행은 수의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즉, 비서류적 조건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다.

2)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1) Wichita Eagle & Beacon Publishing Co. v. Pacific National Bank of San Francisco 사건⁴⁶⁾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임대인을 수의자로 하는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2개의 정지조건⁴⁷⁾과 5개의 해제조건⁴⁸⁾

44) 발행된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에 따라 수의자가 발행한 일람출금환어음, ② 발행의뢰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수의자 회사 두 명의 직원에 의하여 서명된 진술서, ③ 환어음 발행하기 10일전에 발행의뢰인에게 통지, ④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쌀은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행은행 또는 발행의뢰인의 통제하에 보관할 것.

45) 571 F.2d 871(5th Cir 1978).

46) 493 F.2d 1285(9th Cir. 1974).

이 부가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주요특정 중 하나인 독립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고, 이는 신용장과 보증계약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므로 이러한 신용장은 보증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신용장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⁴⁹⁾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용장 조건이 신용장의 기본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신용장 자체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Raiffeisen-Zentralkasse Tirol Reg. Gen. v. First National Bank in Aspen 사건⁵⁰⁾

발행된 신용장상에 오스트리아의 키즈부헬로(Kitzbuhel)부터의 선적과 콜로라도의 아스펜(Aspen)으로 인도는 1976년 9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물품이 지연도착하게 되고 발행은행은 위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거절을 하였으며 수익자로부터 대금을 양도받은 원고은행은 이러한 조건의 위반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1962년 개정 UCP 준거문언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으나 비서류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UCC가 준거법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UCC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삽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비서류적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UCC개정 이전의 사건으로써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이 비서류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하여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47) 2개의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임차인, ② 지정한 기간 내에 구제하는데 실패한 임차인과 그 계약인.

48) 5개의 해제조건(resolutive condition)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Wichita시에서 임차인 또는 그 계약인의 건축허가에 대한 거절을 수락하는 경우, ②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임차인이 계약인의 이행보증을 취득한 경우, ④ 임대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건설을 완료한 경우, ⑤ 임차인과 그 계약인이 1962년 10월 28일까지 건축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취득을 위한 노력 중에 있는 경우 지급금액이 미화 50,000달러로 감소될 것이다.

49) Richard F. Dole, Jr. *op. cit.*, pp.1110-1116.

50) 671 P.2d 1008, 36 UCC Rep.Serv. 254(1983).

3. 한국법원의 판례

한국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종래의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로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적인 성격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무시하거나, 그 조건을 삽입한 신용장발행은행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되게 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을 파기하면서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서류적 조건의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대구은행 남일동지점 대 한빛은행 사건⁵¹⁾

신용장 방식으로 직물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발행된 신용장에서 "최종 매수인이 선화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수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었으며 코드사로부터 위 선적분에 대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모두 매입한 대구은행 남일동지점은 한빛은행 뉴욕지점에 송부하여 대금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의 대금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피고은행에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특수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 문언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고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신용장 발행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수익자인 코드가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책임이 있거나 통제할 상황은 아니지만 최종 매수인의 상품대금 지급을 신용장 대금 지급 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발행은행이 신용장 발행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용인하면서 이 사건 수출 거래나 신용장 거래

51) 대법원 2000.5.30. 선고 98다 47443 판결.

에 임하여 온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신용장 발행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비서류적 조건을 승낙하였는지 여부, 그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을 용인한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국민은행 대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사건⁵²⁾

주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의 지급조건은 비록 백투백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백투백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백투백 신용장 발행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특수 조건은 이 사건 백투백 신용장의 수익자인 파인트리가 자신의 자회사인 현지 법인으로 하여금 미국 수입상에게 약정된 수출 물건을 선적하여 보내도록 한 뒤 피고 다카 지점에게 주신용장과 그 선적서류를 매입하게 하면 피고 다카 지점이 주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으로써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본질에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비서류적 조건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

(1) 동화은행 파산관재인 대 제일은행의 사건⁵³⁾

제일은행은 K회사의 국내본사인 S기업의 의뢰에 따라 K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동화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증신용장에 대한 수익자의 대금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은행에게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your first due date)”라는 조건을

52)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 12983 판결.

53) 서울 고법 제 2001.2.13. 선고 2000나 42474 판결.

요구하였다. 회전신용장하에서 상환연기가 발생하였으며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보증신용장의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발행은행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첫 만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first due date”라는 문구는 보증신용장의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불명확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위 조건은 무시되어져야 하는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판시하였다.

(2) 한국외환은행 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건⁵⁴⁾

여성용 헤어밴드의 수출과 관련한 신용장에서 차이나은행(발행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 검사증명서와 수출자의 확인서 및 상품이 선적된 후 2일 이내에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디에이치엘(DHL)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을 발송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위 신용장에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만 검사증명서상의 서명 확인 부분에 관하여는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비서류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서명과 차이나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로써 UCP 500 제13조 c항에 따라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비서류적 조건을 유효화 시키는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은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신용장 거래의 본질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신용장에서는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DHL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DHL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매입한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은 그 발송일자가 '1998. 9. 26.'인 반면 선화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은 '1998. 9.

54)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 52202 판결.

2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매입한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은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DHL 영수증 원본은 그 자체에 권리가 선 적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수출자측에서 선적 직후 신속하게 선 적서류 사본을 수입자측에 송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한 점을 들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V.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1.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점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을 신용장이 아닌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신용장이 아닌 다른 약정으로 다루어 신용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⁵⁵⁾ 이는 UCC의 공식 주석에서 또한 이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UCC 제5편의 공식주석에서 문서에 '신용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더라도, 발행인에게 문서의 제시가 아니라 발행의뢰인의 건설계약의 불이행과 같은 외부적 사실의 결정에 기초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건이 문면상 매우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고, 만일 무시된다면, 발행인에게 당해 문서상 의무를 지우지 않는 때에는 당해 문서는 신용장이 아니고 아마도 '보증'이나 '기타 계약상의 약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⁵⁶⁾

UCC 제5편은 신용장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신용장에 부가될 수 있는 비서류적 조건을 승인하고는 있지만 동 조항은 비서류적 조건이 발행인의 의무에 본질적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⁵⁷⁾ 비서류적 조건이 발행인의 의무에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것이라면, 수의자가 근거계약을 이행하였는지 또는 발행의뢰인이 불이행하였는지를 발행인이 실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의 삽

55) Janis Penton Soshuk, *op. cit*, p.37.

56) Uniform Commercial Code Rev. Art.5 Official Comment No.9.

57) UCC 5-102, Official Comment 6.

입은 신용장의 성질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UCC 제5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⁸⁾ 이와 같은 경우 신용장에 관한 법이 아닌 보증계약법을 적용하여 발행의뢰인이 그 법에 기초하여 항변을 가능하도록 하여 신용장거래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은행의 대부분은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성이 존재한다.⁵⁹⁾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 당사자간의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제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점이 있으나 관계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는 단점 또한 존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발행은행 또는 발행의뢰인이 비서류적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함으로서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2. 비서류적 조건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대책

신용장관련법규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신용장의 기본원칙인 서류거래의 원칙에 따라 서류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시서류가 요구되지 않은 조건의 경우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⁶⁰⁾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신용장에 명시된 어떠한 조건이 비서류적 조건 또는 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정확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 규정에서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고유한 특징인 독립·추상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비서류적 조건인지 서류적 조건인지의 여부가 모호할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에 있어서는 앞

58) Richard F. Dole, Jr, *op. cit*, p.1099.

59) Janis Penton Soshuk, *op. cit*, pp.39-41.

60) 이상훈,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사례연구”, 「중재연구」 제15권 3호, 한국중재학회, 2005. 12. p.191.

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타 서류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향후 실행이 확실한 사전인지의 여부를 통하여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 행위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 및 완전정확성의 원칙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들은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내용의 삽입 또는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배제 또는 제한되는 조건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건을 무효로 함으로써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유지시키거나, 당사자 자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장거래가 아닌 기타 다른 약정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있어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실질적 계약관계나 특정사항의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신용장거래의 효율성 제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행의뢰인 및 발행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판단하여 비서류적 조건이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신용장거래에 명시된 비서류적 조건은 은행에게 그 조건의 사실관계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장의 가장 본질적 특징인 독립·추상성의 원칙, 엄밀일치 및 완전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과 신용장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규정들은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 은행은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그러한 조건들을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에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 일부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살펴 볼 수 있다. 향후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 및 판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원칙을 만들어 예외적 사항일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용장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유의점과 대응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 발행에 있어서 발행은행 스스로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당사자가 어떠한 조건을 삽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 자치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발행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된 신용장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자는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발행되지 않도록 발행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당해 신용장에 대하여 조건을 변경하여 서류적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 법규정상에 ISP98을 제외하고는 비서류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신용장거래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관련규정을 무조건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신용장거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의 규정은 ISP98 이외에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 규정에서 비서류 조건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유효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신용장상에 반드시 요구서류(documents required)에 대한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비서류적 조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신용장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함에 있어 신용장 문면상에 요구서류를 기재하거나 표기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문제를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경우, 요구된 서류상에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건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비서류적 조건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한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한 규정 및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해석 및 적용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서류적 조건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UCP와 UCC 등의 규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판례에 대한 연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국내문헌>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 서울지방법원, 「국제거래·상사 소송의 실무」, 1997.
- 김영훈, “신용장의 서류비자정조건에 관한 사례연구-최근의 국내판결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3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 _____,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에 관한 연구-신용장통일규칙과 미국통일상법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김선국,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대법원 2000년 5월 30일 선고, 98다 47443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11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 남풍우, 한상현,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과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 서백현,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 98)에 따른 서류검토기준”,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1.
- _____,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연구」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 이상훈,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사례연구”, 「중재연구」 제15권 3호, 한국중재학회, 2005.
- 유중원, “신용장의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에 관한 고찰”, 「판례연구」 제15집(상),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 장홍선, “신용장에 있어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판례연구」 제13집, 부산판례연구회, 2002.

<한국법원 판례>

대구은행 남일동지점 대 한빛은행 사건. 서울 고법 제 2001.2.13. 선고 2000나 42474 판결.

국민은행 대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사건.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 52202 판결.

동화은행 파산관재인 대 제일은행의 사건. 대법원 2000.5.30. 선고 98다 47443 판결.

한국외환은행 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건.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 12983 판결.

<외국문헌>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 of Credit, 1995, Official Comments9.

Busto, Charles del(ed), UCP 500&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ICC Publishing S.A., 1995.

Byrne James E., ISP98 & UCP500 COMPARED, The Institution of Banking Law & Practice, Inc.,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01.

Byrne, James J., "Fundamental Issues in the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Law", Loyola Law Review, Vol. 37, No. 1, Loyola University, 1991.

Barski, Katherine A., "Letter of Credit :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 Law Review, Vol. 41, Loyola University, 1996.

Collyer Gary(ed),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ICC Publishing S.A., 1997.

Collyer Gary & Katz Ron(eds.),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ICC Publishing S.A. 2002.

- , "An analysis of the rec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Vol 101, 1997.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 Revised."Warren, Goham & Lamont, 1996.
- _____, "Letters of Credit: A Comparison of UCP 500 and The New U.S. Article 5", *Journal of Business Law*, Sweet & Maxwell Limited and Contributors, 1999.
- Ellinger E. P.,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Its Development and Current Construction", *The 2001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Practice, Inc., 2001.
- Richard F. Dole Jr., "The essence of a letter of credit under revised U.C.C. Article 5 :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nondocumentary conditions affecting honor", *Houston Law Review*, Vol. 35, 1998.
- , "Warranties by Beneficiaries of Letter of Credit Under Revised Article 5 of the UCC: Th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Houston Law Review*, Vol. 39, No. 2, 2002.
- Noah, Dennis L., "The Case of the "Oily" Non-Documentary Conditions" *Documentary Credit World*, June 2001.
- Soshuk Janis Penton, "The consequences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Brooklyn Law Review*, Brooklyn Law School, Vol. 56, No. 1, 1990.
- Strauss Adam B., "Disguised Guaranties: Liability for Issuers Ignoring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Letter of Credit",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5, A.S. Pratt & Sons, 1998.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GAOR, 50th Sess., Supp. No. 17, at 39-40, U.N. Doc. A/50/17(1995).

<미국판례>

- Continental Grain Company v. Merdien International Bank, LTD , 894. F.Supp. 654(S.D.N.Y. 1995).
- Pringle-Associate Mortgage Corporation v. Southern National Bank of Hattiesburg, Mississippi, 571 F.2d 871(5th Cir 1978).

Raiffeisen-Zentralkasse Tirol Reg. Gen. v. First National Bank in Aspen, 671 P.2d 1008, 36 UCC Rep.Serv. 254(1983).

Sherwood & Robers, Inc. v. First Security Bank of Missoula, 682 p.2d 149(1984)

Wichita Eagle & Beacon Publishing Co. v. Pacific National Bank of San Francisco, 493 F.2d 1285(9th Cir. 1974).

ABSTRACT

Case Study on Acceptability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 Focused on the ICC Interpretation and Caselaws in the U.S. and Korea -

Kang, Won Jin · Kim, Dong Yoon

A non-documentary conditions is a condition contained in the credit without reference to the presented document in compliance therewith, thereby causing many problems to all parties involv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under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IGSLC and Uniform Commercial Code: UCC and also the opinion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several case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CP, ISP98, CIGSLC and UCC stipulate that banks will deem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Second, courts used to permit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Finally, all parties should not attempt to put in any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Key Words : letters of credit, non-documentary conditions,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doctrine of completeness and preciseness, UCP, ISP98, UCC